

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문

[제2024-001호]

사 건 명 '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' 사업조정 권고
연장의 건

신 청 인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(이사장 김선애)
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(이사장 고정호)

피신청인 (주)신세계사이먼 (대표이사 김영섭)

권 고 일 2024. 9. 27.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피신청인에게 2024년 9월 28일부터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.

권 고 사 항

1.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(372개)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한다.

다만,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 한다.

2.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(방송, 신문 등)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한다.

2024. 9. 27.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